

대학원 학칙 시행세칙
<극동규정 제48호> <시행일 2024.11.01.>

제 정: 2003.01.13.
전부개정: 2020.06.01.
개 정: 2022.12.01.
개 정: 2023.12.01.
개 정: 2024.11.01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극동대학교 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입학

제2조(재입학)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초 등록개시일 전까지 소정의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자퇴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과 학사사실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3조(편입학) 편입학은 2학기 또는 3학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주임교수가 지원전공의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하며 각 학위과정의 편입학 이수인정학점은 다음과 같다.

학위과정	편입학기	이수인정학점		비고
		일반대학원	특수대학원	
석사	2	1학기 이상(9학점 이하)	1학기 이상(6학점 이하)	동일 및 유사 관련학과
	3	2학기 이상(18학점 이하)	2학기 이상(12학점 이하)	
박사	2	1학기 이상(9학점 이하)	-	
	3	2학기 이상(18학점 이하)	-	

제4조(학·군 제휴 입학) 대학원의 군 간부 위탁교육에 관한 학·군 제휴협약서(이하 "협약서"라 한다)에 의한 사항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.

①. 국방부장관이 선발, 관할청에 의해서 추천받은 군위탁생은 정원 외 입학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등록금은 50% 감면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학점의 인정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1. 군내 교육기관(국방대학원 등)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동일 및 유사교과목에 한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(협약서 제5조제1항)

2. 군 위탁생이 근무지 변경 시 소속대학원의 승인 하에 협약제휴에 참여한 타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12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. (협약서 제5조제2항)

3. 학위논문작성을 위한 자격시험(외국어 및 종합시험)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장에 따른다.

4.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는 대학원의 학칙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며 주제는 소속 학과의 전공과 관련하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. 논문을 미작성할 시에는 졸업시험을 필하여야 한다.

5. 대학원은 필요시 군내 전문가를 논문 지도교수로 위촉하여 공동으로 지도하게 할 수 있다. (협약서 제6조 제3항)

제3장 교육과정, 수업

제5조(교과목의 개설 및 폐강) ① 각 전공별 주임교수는 교육과정에 따른 개설과목 및 교수진에 대한 시안을 개강 4주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수강생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폐강할 수 있다.

제6조(강사임용) 강사 임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강사임용규정에 따른다.

제7조(강의계획서) 교수자는 담당교과목에 대하여 당해 학기 개시 4주전까지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강의시간 및 장소) 교과목의 강의시간 및 강의 장소는 대학원장이 지정하고,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의시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9조(수강신청)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과에 제출하

여야 한다.

②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일체 인정되지 않으며, 일단 신청한 과목을 취소하지 않고 수강도 하지 않을 경우 그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.

③ 수강신청을 한 모든 학생은 개강 후 2주일 내에 교학과에서 본인의 수강신청사항을 확인한 후, 수강신청 사항 확인 및 변경 원을 교부 받아야 한다.

④ 수강과목의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학과에 수강신청사항 변경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재수강) ① 1회에 한하여 동일교과목으로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

② 재수강한 교과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 성적을 인정하고, 하위 성적의 교과목은 학점을 말소하며, 평점평균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.

제11조(출결) ① 각 과목 총 수업일수의 3/4이상 출석하여야 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인정한다.

② 해외출장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유고결석 여부를 대학원장이 결정하며, 유고결석 허용기간은 학기 중 2주 이내로 한다.

제12조(성적평가표 제출) 과목 담당교수는 성적평가표를 종강 후 2주 이내에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장 자격시험 및 졸업시험

제13조(응시자격)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석사과정은 1학기를 수료하고 6학점이상 취득한 자,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2학기를 수료하고 12학점이상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.

②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취득학점이 평균성적 B 이상으로 석사과정은 3학기 이상 재학 자, 박사과정은 4학기 이상 재학 자,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.

제14조(응시절차)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응시원서와 전형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시험범위) ① 외국어시험은 외국어의 독해능력과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시험한다.

② 종합시험은 전공영역 및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시험한다.

제16조(시험과목 및 방법) 각 과정의 시험과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① 석사과정

1. 외국어시험은 일반영어 1과목으로, 전공분야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독해력을 측정하는 필기고사를 원칙으로 한다.

2. 종합시험은 전공과목 3과목으로 한다.

② 박사과정

1. 외국어시험은 1개의 외국어로 하되, 영어, 일어, 중국어, 불어, 독일어 중 하나를 선택한다.

2. 종합시험은 전공과목 4과목으로 한다.

제17조(외국어시험 면제) 일반대학원의 외국어시험 대상자 중 TOEFL 성적이 550점 이상, 또는 TOEIC 성적이 700점 이상인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
제18조(졸업시험) ① 특수대학원 재학생 중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학기차에 졸업시험을 필하여야 한다. 졸업시험은 전공과목(영역)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영역(과목)중에서 4개영역(과목)을 시행한다.

②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정해진 전형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교학과로 제출하여야한다.

③ 졸업시험의 시험기간은 과목당 60분을 원칙으로 하고, 각 과목별 100점 중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.

④ 졸업시험은 5월과 11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, 대학원의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 및 변동될 수 있다.

⑤ 졸업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재학연한 내에 재 응시 할 수 있다.

제19조(시험출제) 대학원장이 전공과정별 출제위원을 위촉하며, 출제위원은 출제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0조(합격인정점수)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별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으로 한다.

제21조(재시험) 불합격 과목은 재학연한 내에 재응시 할 수 있다. 단, 불합격한 과목은 다른 미응시 과목으로 대체하여 응시할 수 있다.

제22조(합격인준)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결과는 대학원장이 합격 인준한다.

제5장 학위논문

제23조(지도교수의 선임)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은 2학기차에 지도교수를 선임한다.

제24조(지도교수의 변경) 논문지도교수를 부득이하게(사망, 휴직, 퇴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지도교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)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‘논문지도교수 변경원’을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.

제25조(지도교수의 자격) ①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.
다만, 소속학과에 관련전공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 소속학과의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비전임교원도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.
다만, 석사과정 학과(전공)의 특성상 박사학위가 없는 전임교원도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.
② 지도교수는 유사학과 및 유사전공의 전임교원도 가능하다.
③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, 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.

제26조(논문연구계획서 제출) 학위논문을 제출할 학생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2학기 차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서 소정의 기간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7조(제출자격)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(이하 “논문”이라 한다)의 제출자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석사과정
 - 1.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. 단, 교육대학원은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
 - 2.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 - 3. 학칙에 정해진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총 평균평점이 B(3.0)이상인 자
- ② 박사과정
 - 1.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
 - 2.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 - 3. 학칙에 정해진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총 평균평점이 B(3.0)이상인 자
- ③ 통합과정
 - 1. 7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
 - 2.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,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 - 3. 학칙에 정해진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총 평균평점이 B(3.0)이상인 자

제28조(제출서류)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다음의 서류와 함께 소정의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- 1.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(소정양식) 1부
- 2. 심사논문(석사 3부, 박사 및 통합과정 5부)
- 3. 연구윤리서약서(소정양식) 1부
- 4. 기타 서류

제29조(심사논문 제출)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[붙임1 학위논문 작성지침]에 따라 석사과정은 논문초고 3부,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논문초고 5부를 작성하여 심사 신청서와 함께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0조(논문심사위원 위촉) ① 각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 제출자가 있을 경우 논문심사위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청하고 대학원장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을 심사토록 한다. 다만, 논문제출자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타대학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의 경우 3인,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경우 5인으로 하며, 박사과정은 외부 심사위원을 1인 이상 위촉하고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. 단,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.

③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.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, 해외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.

제31조(논문심사)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누어 실시한다.

- 1. 예비심사
 - 가. 매년 5월과 11월에 한다.
 - 나. 심사위원은 논문의 주제, 체제 및 연구방법, 연구자의 발표도 및 이해도 등을 엄밀히 심사한다.
 - 다. 지도교수는 심사위원들의 예비심사 결과에 의하여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의 수정 보완을 지시 한다.

라. 석사과정은 1회 이상,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3회 이상 심사한다.

2. 본 심사

가.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.

나. 매년 6월과 12월에 한다.

다.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논문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, 내용과 체제상으로 학위논문으로 결함이 없는가를 판정한다.

라.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2/3 이상,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심사위원 4/5 이상 찬성하고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.

마.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논문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 보완 후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 할 수 있다.

②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를 소정서식에 의거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32조(논문제출 시한) 논문제출 시한은 석사과정은 수료 후 2년, 박사 과정 및 통합과정은 수료 후 4년 이내의 재학기간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, 휴학기간 및 군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.

제33조(완성논문 제출) 논문심사에 합격된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교학과 에서 논문인준서를 수령하여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라 인쇄하여,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은 후 3부를 포함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논문 13부 및 논문파일을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4조(박사학위논문의 공표)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관할청장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6장 복수학위

제35조(본교 재학생의 교류대학 수학)

① (수학기간 및 신분)

1. 수학기간은 우리 대학원에서 최소 2학기, 교류대학에서 최소 2학기로 한다. 단 협정 체결 시 다르게 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.

2. 수학기간 동안 우리 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적을 보유한다.

② (지원자격 및 선발)

1. 지원하는 학생의 자격과 선발절차는 대학 간 협정서에 따른다.

2. 과정 운영은 대학 간 협정서에 따른다.

③ (학점인정)

1. 우리 대학원 및 교류대학의 교육과정을 양교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이수하여야 한다.

2.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기 당 소속 학과(전공)의 최대 이수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,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3. 수학기과정의 학점인정은 전공 기준으로만 인정한다. 다만,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공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.

④ (수학기간 변경)

1. 협약서에 명시된 교류대학의 수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2. 교류대학 수학 중 우리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학을 포기할 수 있다.

3. 우리 대학원생은 교류대학 수학 중 1회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, 우리 대학원에서도 휴학절차를 밟아야 한다.

⑤ (등록금 납부)

1. 등록 절차에 따라 매학기 정해진 등록금을 우리 대학과 교류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.

2. 교류대학과 별도 합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.

⑥ (장학금) 대학원은 복수학위과정 학생의 학업장려를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6조(교류대학 학생의 우리 대학 수학) ① (지원자격) 우리 대학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교류대학 학생은 소속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
② (수학기간)

1. 복수학위 협정서에 의거한다.

2. 협정서에 별도로 명시되었거나 소속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학기간을 단축 운용할 수 있다.

③ (등록금 납부)

1. 우리 대학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교류대학 학생은 우리 대학원의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2. 수업료는 양 대학원간의 협정서의 규정에 따른다.
- ④ (수강신청 및 학점취득)
 1. 수강신청, 변경 및 취소는 우리 대학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.
 2.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는 우리 대학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.
 3. 기타 이수 교과목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.

제7장 장학금, 대학원생 연구비

제37조(장학금 종류) 대학원장학금의 종류는 <별표1>과 같고 장학금액의 결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 단, 대학본부, 부속기관, 국가기관, 사회단체 또는 장학금 출연자가 따로 정한 교내외 장학금은 해당 부서 및 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.

제38조(대상자)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대학원에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결정은 매 학기말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, 장학금의 지급은 총장이 결정한다.
- ③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.
 1. 선발대상자 중 해당학기 성적평균이 동일 점수일 경우 직전학기 장학금 미 수혜자, 해당학기 취득 학점수가 많은 자, 재학 학기가 낮은 자, 직전 학기 성적평균이 높은 자, 직전학기 취득학점수가 많은 자, 우리 대학교 출신자,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선발한다.

제39조(지급) ① 장학금은 등록기간 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장학금은 해당학기 정상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.
- ③ 각종 장학금은 이중수혜를 인정하지 않으며 1인1종류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(단, 특별장학 5, 공로장학, 생활장학, 근로장학, 지역인재장학은 예외로 한다.)
- ④ 학적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입학 당시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 복학시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.
- 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 1. 휴학자
 2. 학칙을 위배한 자
 3. 징계처분을 받은 자

제40조(연구비지급) ① 우리 대학원은 석사,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에게 교내 또는 교외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연구비 지급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재적생에게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학위논문 작성지침

1. 제출 자격

가. 석사과정

- ① 4학기(교육대학원은 5학기)이상 등록을 필하고 최종학기 취득예정학점을 각 대학원별 이수해야 할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

■ 일반대학원

과정별 \ 영역별	전공	연구	이수학점 계	비고
석사학위과정	24	2	24학점 이상	연구필수

■ 특수대학원 및 연구과정

대학원별 \ 영역별		교직	전공	연구	이수학점 계	비고
교육대학원	논문작성제	(4)	24	3	24학점 이상	연구필수
	졸업시험제	(4)	30	-	30학점 이상	-
글로벌대학원	논문작성제	-	24	2	24학점 이상	연구필수
	졸업시험제	-	30	-	30학점 이상	-
보건과학대학원	논문작성제	-	24	2	24학점 이상	연구필수
	졸업시험제	-	30	-	30학점 이상	-
산업기술보안대학원	논문작성제	-	24	2	24학점 이상	연구필수
	졸업시험제	-	30	-	30학점 이상	-

- ② 일정한 자격시험(외국어시험, 종합시험)을 통과하고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공개발표를 필한 자

나. 박사과정

- ①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최종학기 취득예정학점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
- ②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공개발표를 필한 자

2. 제출서류

- 가.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서 및 심사료 납부 -----1부
- 나. 논문완성본제출(인준서 원본 2부포함) -----6부
- 다. 기타 서류

3. 학위논문 진행 절차

- 가. 논문연구계획서(논문지도교수 신청) 제출: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2학기 차
- 나. 학위논문 심사원서 및 심사용 원고 제출: 4학기 차(교육대학원은 5학기 차), 박사과정 5학기 차 이상
- 다. 논문심사위원 위촉: 석사과정(3인 이상), 박사과정(5인 이상)
- 라. 예비심사: 석사과정은 2/3 이상 찬성, 1회 이상, 박사과정은 4/5이상 찬성, 3회 이상
- 마. 본심사: 석사과정은 2/3 이상 찬성, 박사과정은 4/5이상 찬성
- 바. 판 정: 석사과정은 2/3이상, 박사과정은 4/5이상 찬성하고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
- 사. 학위논문 제출: 완성 논문 6부(2부는 인준서 원본), 논문파일, 저작물이용동의서

4. 학위논문 심사 방법

- 가. 심사위원 구성: 논문 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은 3인, 박사과정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,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.

나. 학위논문 심사방법: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한다.

1) 예비심사

- ① 심사위원 전원 참석으로 1회 이상(박사과정은 3회 이상)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게 예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논문 제출자는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심사의 판정은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2/3 이상, 박사과정은 심사위원 4/5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여부를 판정한다.
- ③ 지도교수는 심사위원들의 예비심사 결과에 의하여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의 수정 보완을 지시한다.

2) 본심사

- ①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의 수정, 보완을 검토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.
- ② 본심사의 판정은 석사과정(심사위원 2/3 이상), 박사과정(심사위원 4/5 이상)의 찬성 및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.
- ③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논문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 보완 후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다.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: 본심사에 합격한자는 합격 후 1개월 이내에 본교 학위논문체제에 맞게 인쇄하여 인쇄본 6부 및 논문파일이 수록된 USB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중 2부는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

※ 논문은 지적사항 보완 후 심사위원의 확인이 있는 후 인쇄하여야 하며, 하드카바 2부는 각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아 제출한다.

※ 논문제목은 반드시 논문심사결과보고서의 제목과 일치하여야 한다.

(일치하지 않을 경우, 논문제목 수정 사유서를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.)

5. 학위논문 작성 요령

1. 논문크기 : 4×6배판 (19cm × 26cm)

2. 지 질 : 70파운드 이상 백색 모조지

3. 인쇄양식 : 전산인쇄 또는 활판인쇄로 하되 단면인쇄5호 1단 양면인쇄

4. 제본형식 : 클로스 양장

5. 논문의 체제와 순서

가. 표지(Hard Cover)<서식1> : 석사과정은 곤색 양장 금박 표지, 박사과정은 흑색 양장 금박 표지

나. 속표지(Soft Cover)<서식3> : 회색 레자크 표지

다. 인준서<서식4>

라. 목차<서식5>

마. 국문초록

바. 본문<서식6>

㉠ 글자체는 명조(신명조) 계열 사용

㉡ 흑색 잉크 사용(수록자료는 칼라 사용 가능)

㉢ 글자 크기는 11pt, 줄 간격은 180~220%

㉣ 단면 또는 양면 인쇄(양면 인쇄시 90~100g/㎡의 용지 사용)

사. 참고문헌

아. 부록 및 색인 :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.

자. 영문초록 : (특수대학원은 제외)

차. 감사의 글 :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.

카. 회색 레자크 표지

타. 뒷표지

<서식 1>

논 문 표 지 (19cm × 26cm)

3cm ↑

← 3cm → ○ ○ ○ ○ 학위 논문 ----- (16pt)

3cm ↑

제 목 ----- (20pt)

1cm ↑

영 문 ----- (14pt)

----- 극동대학교 ○ ○ 대학원 ----- (20pt)

1cm ↑

----- ○ ○ 학과 ○ ○ ○ 전공 ----- (16pt)

1cm ↑

----- 성 명 ----- (16pt)

1cm ↑

----- 0000 년 0 월 ----- (16pt)

(※ 학위취득예정일, 0000년 2월, 0000년 8월)

3cm ↑

<서식 2>

논 문 등 표 지 (19cm × 26cm)

	2cm ↑↓ 논 문 제 목 (14pt) 줄 업 년 도 (14pt) 성 명 (14pt) 2cm ↑↓	
--	--	--

↑
6cm
↓

논 문 제 목 -----(20pt)

1cm ↑↓

영 문 -----(14pt)

2cm ↑↓

지도교수 ○ ○ ○ -----(16pt)

3cm ↑↓

이 논문을 ○ ○ ○ ○ 학위논문으로 제출함--(16pt)

2cm ↑↓

0000년 0월 ----- (16pt)

(※ 학위취득예정일, 0000년 2월, 0000년 8월)

3cm ↑↓

극동대학교 ○ ○ 대학원 ----- (20pt)

2cm ↑↓

○ ○ 학과 ○ ○ ○ 전공 ----- (16pt)

2cm ↑↓

성 명 ----- (16pt)

↑
3cm
↓

<서식 4>

논문인준서 (19cm × 26cm)

	↑
	5cm
	↓
← 3cm →	○○○의 ○○○ ○○○ 학위 논문을 인준함. -----(20pt)
	↑
	5cm
	↓
	심사위원장 _____인 (14pt) ← 3cm →
	1cm ↑↓
	심사위원 _____인 (14pt) ← 3cm →
	1cm ↑↓
	심사위원 _____인 (14pt) ← 3cm →
	↑
	5cm
	↓
	0000년 0월 -----(14pt)
	(인준일의 년, 월)
	↑
	3cm
	↓
	극동대학교 ○○대학원 -----(14pt)
	↑
	3cm
	↓

<서식 5>

목 차 (19cm × 26cm)

	↑	
	3cm	
	↓	
목 차		----- (16pt)
	↑	
	1cm	
	↓	
3cm		2cm
↔ I. 서 론 (14pt, 진하게)-----		1↔
1. ○○○○ (12pt)-----		1
2. ○○○○ (12pt)-----		5
1) ○○○○ (12pt)-----		11
2) ○○○○ (12pt)-----		15
II. ○○○○○○○○ (14pt, 진하게)-----		19
1. ○○○○ (12pt)-----		25
2. ○○○○ (12pt)-----		30
III. ○○○○○○○○ (14pt, 진하게)-----		39
1. ○○○○ (12pt)-----		50
2. ○○○○ (12pt)-----		60
3. ○○○○ (12pt)-----		75
IV. 결 론 (14pt, 진하게)-----		90
참고문헌 -----		101
영문초록 -----		110

3cm

I. 서 론 -----(16pt, 진하게)

$\leftarrow 3\text{cm} \rightarrow$

$\leftarrow 2\text{cm} \rightarrow$

1. ○○○○ -----(13pt)

1) ○○○○○○ ----- (12pt)

•

.

.

.

•

•

•

•

•

1

- page -

↑

2cm

<별표1-1> 2021학년도 이천 대학원 교내 장학금

장학종별	수혜 자격기준	수혜기준	비고
신입생 성적우수 장학	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자로서 대학원 각 학과별 입학성적 우수자	1등 40%, 2등 30%, 3등 20% 감면 (등록기준 3명 이하일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 의결)	감면고지 또는 후지급
성적우수 장학	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 4.0 이상으로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	수업료의 30% 장학금 지급	감면고지
연구보조장학	일반대학원 각 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 중 해당학과에서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으로 학과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	수업료의 50% 장학금 지급	감면고지
조교장학	본 대학 학과조교(특수대학원 입학자)로 재직 중인 자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자	수업료의 70% 장학금 지급	감면고지
자매결연 및 산학협력기관 장학	본교와 자매결연/산학협력을 체결한 협정기관 재직자(회원) 및 자매결연 학교 출신자	입학금 면제, 수업료의 40% 장학금 지급 (단, 협약서에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른다.)	감면고지
연구·학업 장려 장학	1. 특수대학원 입학자 2. 특수대학원 재학생으로 연구 및 학업에 적극적인 자	수업료의 30% 장학금 지급	감면고지
원우회 장학	교육대학원 원우회장과 임원으로서 대학원 발전에 공헌한 자	최종학기 등록금을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 의결	감면고지
공로 장학	전국규모이상의 학예술경연대회 참가자, 입상자 또는 본교 대내외 행사 참가자	대학원위원회 결정 또는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자체 운영 지급 지침에 따름	학기 중
교직원 배우자 및 자녀 장학금	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자녀가 본원에 입학하는 자	수업료의 50% 장학금 지급	감면고지
한가족 장학	가족 중 2인 이상 동시에 재학하는 자(학부 포함)	수업료의 50% 장학금 지급 학부+대학원 = 대학원50% 대학원+대학원=1인 50%, 1인 타 장학	감면고지
지역인재 장학	본교출신자(대학, 대학원포함) 또는 주민등록상 경기도 - 이천, 여주, 안성 충 북 - 전지역	입학금 면제	감면고지
특별 장학	1. 5급 이상의 공무원·사법·행정·외무·기술고시·공인회계사·군법무관·입법 사무관 시험 최종 합격자 2. 본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(배우자, 자녀포함)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. 경제사정 곤란자(소득7분위)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. 4. 본교출신자(대학, 대학원포함)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. 총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	수업료의 50%~100% 장학금 지급 (대학원위원회 심의 의결)	감면고지
외국인유학생 장학	1.본 대학원 입학 시 TOPIC 3급 이상 또는 TOEFL IBT 71, IELTS 5.5, TEPS 600 이상인자 2. 성적우수 장학: 본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 4.0 이상으로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. 업무보조장학: 본 대학원 각 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 중 행정부서 및 학과에서 업무보조를 수행하는 학생으로 학과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 4. 본교와 자매결연/산학협력을 체결한 협정기관 재직자(회원) 및 자매결연 학교 출신자 5. 근로 장학: 각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의 필요에 의해 선발되어 근로하는 학생	1. 수업료의 40% 장학금 지급 2. 수업료의 40% 장학금 지급 3. 수업료의 50% 장학금 지급 4. 입학금면제, 수업료의 40% 장학금 지급 (단, 협약서에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른다.) 5.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자체 운영 지급 지침에 따름	감면고지
근로 장학	각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의 필요에 의해 선발되어 근로하는 학생	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자체 운영 지급 지침에 따름	학기 중
생활 장학 (재학생 및 외국인)	1. 경제사정 곤란자로 총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(생활비 지급) 2. 총장이 지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	1. 생활비 일정액 2. 생활관비 일정액 ※기간 및 금액, 지급기준은 생활관 운영 지급 지침에 따름	학기 중

<별표 1-2> 2025학년도 이후 대학원 교내 장학금

장학종별	수혜 자격기준	수혜기준	비고
연구보조장학	일반대학원 각 과정 신입·재학생 중 해당학과에서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으로 학과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	수업료의 50% 장학금 지급	감면 고지
조교장학	본 대학 학과조교로 재직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	수업료의 70% 장학금 지급	감면 고지
자매결연 및 산학협력기관 장학	자매결연/산학협력을 체결한 협정기관 재직자(회원) 및 자매결연 학교 출신자	입학금 면제, 수업료의 30% 장학금 지급(단, 협약서에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른다.)	감면 고지
연구·학업장려 장학	특수대학원 입학자	수업료의 25% 장학금 지급	감면 고지
교직원 배우자 및 자녀 장학금	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자녀가 본원에 입학하는 자	수업료의 50% 장학금 지급	감면 고지
한가족 장학	가족 중 2인 이상 동시에 재학하는 자(학부 포함)	수업료의 50% 장학금 지급 · 학부+대학원 = 대학원50% · 대학원+대학원=1인 50% (1인 타 장학)	감면 고지
지역인재 장학	본교출신자(대학, 대학원포함) 또는 주민등록상 본교 인근 소재 거주 지역주민 ▸ 경기도(이천, 여주, 안성) ▸ 충북(전지역)	입학금 면제	감면 고지
특별 장학	1. 5급 이상의 공무원·사법·행정·외무·기술고시·공인회계사·군법무관·입법 사무관 시험 최종 합격자 2. 본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(배우자, 자녀포함)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. 경제사정 곤란자(소득7분위)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. 4. 총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	수업료의 40%~100% 장학금 지급	감면 고지
외국인유학생 장학	1. 본 대학원 입학 시 TOPIC 3급 이상 또는 TOELF IBT 71, IELTS 5.5, TEPS 600 이상인자 2. 본교와 자매결연/산학협력을 체결한 협정기관 재직자(회원) 및 자매결연 학교 출신자	1. 수업료의 25% 장학금 지급 2. 협약서 기준에 따라 지급	감면 고지